보석·구속집행정지 및 적부심 등 사건의 처리에 관한 예규(재형 2003-5) 일부개정예규

1. 개정이유

○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제16923호)의 개정, 시행으로 피고인에게 전자장치 부착을 보석조건으로 부과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위 법률의 관련 내용을 예규에 반영하고 해당 업무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전자장치 부착 조건부 보석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법원이 부과할 수 있는 보석조건에 전자장치 부착 조건이 포함됨을 명시함(안 제5조제1항, 제9조)

○ 보석 조건으로 전자장치 부착을 명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관할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피고인의 직업, 경제력, 가족상황, 주거상태, 생활환경 및 피해회복 여부 등에 관한 사항의 조사를 의뢰할 수 있음을 명시함(안 제7조제4항 신설)

○ 전자장치 부착을 조건으로 보석을 허가하는 경우 전자장치 부착을 위해 피고인이 보호관찰소에 출석하여 신고해야 하는 일시를 반드시 구체적으로 지정하도록 함(안 제8조제1항)

○ 전자장치 부착을 조건으로 보석을 허가한 경우 그 결정문의 등본을 관할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송부하도록 하고, 긴급한 때에는 모사전송 등의 방법으로 그 사본을 먼저 송부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의2 신

설)

○ 전자장치 부착을 조건으로 보석을 허가한 피고인의 보석조건 이행상황을 신속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보고를 요구할 수 있음을 명시함(안 제13조제3항)

○ 전자장치 부착을 조건으로 보석을 허가한 피고인에 대하여 보석조건을 변경하거나 보석을 취소하는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결정문의 등본을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송부하도록 하고, 긴급한 때에는 전화·모사전송·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먼저 통지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의2제1항 신설)

3. 보석·구속집행정지 및 적부심 등 사건의 처리에 관한 예규 일부개정예규

붙임과 같음

4. 신·구 조문대비표

붙임과 같음

대법원재판예규 제　　호　　2020. . . 결재

보석·구속집행정지 및 적부심 등 사건의 처리에 관한 예규(재형 2003-5) 일부개정예규

제4조제1항 중 “납부”를 “납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장치부착법’이라 한다) 제2조 제4호에서 정한 위치추적 전자장치(이하 ‘전자장치’라 한다)의 부착”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보석조건”을 “보석조건(전자장치부착법 제31조의2 제1항에 따른 전자장치 부착 조건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7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법원은 보석 조건으로 전자장치 부착을 명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그 법원의 소재지 또는 피고인의 주거지 관할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피고인의 직업, 경제력, 가족상황, 주거상태, 생활환경 및 피해회복 여부 등에 관한 사항의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전산양식 B1714).

제8조제1항 중 “기재하여야 한다(B1704).”를 “기재하여야 하고, 특히 전자장치 부착을 조건으로 보석을 허가하는 경우에는 전자장치 부착을 위해 피고인이 보호관찰소에 출석하여 신고해야 하는 일시를 반드시 구체적으로 지정하여야 한다(전산양식 B1704).”로 한다.

제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2(전자장치 부착 조건부 보석허가결정문의 송부)

법원은 전자장치 부착을 조건으로 보석을 허가한 경우 전자장치부착법

제31조의3 제1항에 따라 지체 없이 그 결정문의 등본을 피고인의 주거 관할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긴급한 때에는 모사전송·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그 사본을 먼저 송부할 수 있다.

제9조 중 “석방조건”을 “석방조건(전자장치부착법 제31조의2 제1항에 따른 전자장치 부착 조건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12조제2항 중 “의하여 여행허가신청서”를 “의한 여행허가신청서 및 [전산양식 B1609]에 의한 외출허가신청서”로 한다.

제13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법원은 전자장치 부착을 조건으로 보석을 허가한 피고인의 보석조건 이행상황을 신속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제13조제4항 중 “제1,2항의 조회결과 또는 사실조사결과”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조회, 사실조사, 보고결과 및 전자장치부착법 제31조의4 제1항에 따른 통지결과”로 한다.

제1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의2(전자장치 부착 조건부 보석의 보석조건 변경 및 보석취소 등 통지)

① 법원은 전자장치 부착을 조건으로 보석을 허가한 피고인에 대하여 보석조건을 변경하거나 보석을 취소하는 때에는 전자장치부착법 제31조의4 제3항에 따라 지체 없이 그 결정문의 등본을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긴급한 때에는 전화·모사전송·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먼저 통지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은 구속영장의 효력이 소멸한 경우에 준용한다.

부 칙

이 예규는 2020. 8. 5.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접수안내) ① 각급법원은 민원접수창구에 다음 사항을 게시한다. 1. 법원이 보석을 허가하면서 서약서·약정서·출석보증서 등 각종 서류의 제출이나 보석보증금의 납부 등을 조건으로 할 수 있고, 보석 허가 결정에서 명한 조건이 이행되지 않는 경우 석방이 되지 않거나 보석이 취소될 수 있다는 취지 2. ~ 3. (생 략) ② (생 략)	제4조(접수안내) ①---------- ----------. 1. ---------- ---------- ---------- -------납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장치부착법’이라 한다) 제2조 제4호에서 정한 위치추적 전자장치(이하 ‘전자장치’라 한다)의 부착---------- 2. ~ 3.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5조(보석조건에 관한 의견과 진술서 제출) ① 법원은 보석 청구인이 법 제98조 각 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다양한 보석조건 중 피고인에게 가장 적합한 보석조건에 관한 의견을 밝힐 경우 이를 고려하여야 한다. ② ~ ④ (생 략)	제5조(보석조건에 관한 의견과 진술서 제출) ① ---------- ---------- ----------보석조건(전자장치부착법 제31조의2 제1항에 따른 전자장치 부착 조건을 포함한다)----------.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7조(보석의 심리)	제7조(보석의 심리)

① ~ ③ (생 략)	① ~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법원은 보석 조건으로 전자장치 부착을 명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그 법원의 소재지 또는 피고인의 주거지 관할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피고인의 직업, 경제력, 가족상황, 주거상태, 생활환경 및 피해회복 여부 등에 관한 사항의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전산양식 B1714).
제8조(보석의 결정) ① 법원은 보석을 허가하는 경우에는 피고인에게 어떠한 보석조건이 부과되는지 명백하게 특정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B1704).	제8조(보석의 결정) ① ----------기재하여야 하고, 특히 전자장치 부착을 조건으로 보석을 허가하는 경우에는 전자장치 부착을 위해 피고인이 보호관찰소에 출석하여 신고해야 하는 일시를 반드시 구체적으로 지정하여야 한다(전산양식 B1704).
② ~ ③ (생 략)	② ~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제8조의2(전자장치 부착 조건부 보석허가결정문의 송부) 법원은 전자장치 부착을 조건으로 보석

	을 허가한 경우 전자장치부착법 제31조의3 제1항에 따라 지체 없이 그 결정문의 등본을 피고인의 주거지 관할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긴급한 때에는 모사전송·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그 사본을 먼저 송부할 수 있다.
제9조(다양한 보석조건의 활용) 법원은 보석을 허가함에 있어 구속사유를 대체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법 제98조 각 호의 다양한 석방조건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야 한다.	제9조(다양한 보석조건의 활용) ----------석방조건(전자장치 부착법 제31조의2 제1항에 따른 전자장치 부착 조건을 포함한다)----------.
제12조(보석 조건의 변경) ① (생 략) ② 제1항의 규정은 [전산양식 B 1607]에 의하여 여행허가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에 준용한다.	제12조(보석 조건의 변경) ① (현행과 같음) ② ----------의한 여행허가신청서 및 [전산양식 B1609]에 의한 외출허가신청서----------.
제13조(보석허가결정 후의 조치) ① ~ ② (생 략) <신 설>	제13조(보석허가결정 후의 조치)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법원은 전자장치 부착을 조건으로 보석을 허가한 피고인의

	보석조건 이행상황을 신속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③ 제1,2항의 조회결과 또는 사실조사결과는 본안기록에 편철하여 보석취소 여부의 판단자료로 활용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조회, 사실조사, 보고결과 및 전자장치부착법 제31조의4 제1항에 따른 통지결과----------.
<신 설>	제14조의2(전자장치 부착 조건부 보석의 보석조건 변경 및 보석취소 등 통지) ① 법원은 전자장치 부착을 조건으로 보석을 허가한 피고인에 대하여 보석조건을 변경하거나 보석을 취소하는 때에는 전자장치부착법 제31조의4 제3항에 따라 지체 없이 그 결정문의 등본을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긴급한 때에는 전화·모사전송·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먼저 통지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은 구속영장의 효력이 소멸한 경우에 준용한다.

< 의안 소관 부서명>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 형사지원심의관실	
연락처	(02) 3480 - 1579